

2026년 제63회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 해설

[강사 총평]

제63회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은 최신판례를 모티브로 한 [문제-1] 및 [문제-2], 소송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3], 심사 절차 및 법정사용권을 묻는 [문제-4]로 구성되어, 제62회와 비교할 때 비교적 무난한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문항별로 보면 답을 틀리거나 누락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문제-1]은 Tirr Lirr 119조1항 3호 판례가 아닌 Tirr Lirr 무효심판 판례가 큰 배점으로 나오고 오히려 Tirr Lirr 119조1항3호 판례가 비교적 작은 배점으로 나와서 강약조절이 필요했고 설문(3)에서 취소심결 확정 효과의 약술형으로 물어서 체감 난이도가 다소 있었고, [문제-2]에서는 甲 상표권의 지정상품, 乙의 리폼 행위의 태양 및 사은품의 사용태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사실 해석의 문제가 있었고, [문제-3]은 소취하 합의의 합의해제라는 비교적 낱돌 쟁점이 주어지고 단일 쟁점인 하위 사건 내용을 상당히 큰 배점으로 제시하여 사안포섭의 난이도가 높았고, [문제-4]는 심사 절차를 묻는 준약술형 문제와 “조치 및 대응 조치”를 묻는 조치형 문제를 섞어서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목요연하게 목차를 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해설은 실제 시험이라는 압박감과 2시간이라는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번의 검토를 통해 작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고, 저의 해설이 실제 채점기준에 얼마나 부합할지 알 수 없지만 출제의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자료로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경훈 드림

[문제-1]

甲은 2014. 9. 12. 주식회사 X로부터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스노우 고글, 스키용 고글, 스포츠용 고글’과 제 35류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온라인 광고업, 마케팅 서비스업, 간행물 광고업’에 대하여 상표 ‘ Pohr Bohr’(이하 ‘표장 1’이라 함)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8. 이들 상표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을 받았다. 甲은 2014년 말부터 ‘Pohr Bohr’, ‘포르보르’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스포츠용 고글’에 대한 영업을 시작하였고, 영업 관련 광고비와 판매촉진비를 크게 증액하여 ‘마케팅 서비스업’을 하였고,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 乙은 2017. 4. 28.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죽제 가방, 스포츠 가방, 쇼핑용 가방’ 및 제35류의 ‘제품 마케팅업,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서비스업,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업, 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하여 ‘포르보르’와 ‘Pohr Bohr’(이하 ‘표장 2’라 함)를 상표등록출원하여 2017. 10. 6. 둘 다 상표등록을 받았다. 乙은 2017년 5월경부터 등록상표 ‘포르보르’, ‘Pohr Bohr’를 지정상품 ‘스포츠 가방’에 사용하여 광고와 홍보를 하면서 상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고, 인터넷에서 ‘마케팅 서비스업’을 하면서 2020년 경에는 매출이 100억원을 초과하였다.

甲은 2019. 1. 22. 지정상품 ‘스포츠 가방’에 대하여 상표 ‘ Pohr Bohr’(이하 ‘표장 3’이라 함)를 상표등록출원하여 2019. 8. 27. 상표등록을 받았다. 甲은 ‘표장 3’을 이용한 포장 디자인을 丙에게 의뢰하는 등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고, 乙의 ‘표장 2’를 등록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다만, 甲은 乙의 ‘표장 2’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표장 3’을 사용하면 乙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표장 3’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甲은 丁과 2022. 4. 8. 甲의 ‘표장 3’에 대하여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丁은 2023년 6월 말까지 甲의 ‘표장 3’의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광고행위를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 甲은 2019. 10. 8. 특허심판원에 乙의 ‘표장 2’에 대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와 제13호를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甲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논하시오. (12점)

I. 설문(1) (12점)

1. 무효심판의 의의, 취지 및 쟁점정리 (法117조)

2. 청구의 적법여부 (적극)

① 청구인적격 인정, ② 제척기간 준수 → 적법

3. 法34조1항7호의 무효사유 존부 (제한적 적극) (★)

(1) 法34조1항7호의 의의 및 判例가 실시한 취지

(2) 상표의 유사여부 (적극)

(3) 소결 - 제35류에 한하여 존재

4. 法34조1항13호의 무효사유 존부 (적극) (★)

(1) 法34조1항13호의 의의 및 判例가 실시한 취지

(2) 부정한 목적 존부 (적극)

‘표장 1’은 제9류 및 제35류 모두에 인식도 취득, 양 상표는 유사, 제9류와 제18류는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고 제35류는 동일·유사 등 → 부정한 목적 인정

(3) 소결 - 제18류 및 제35류 모두에 존재

5. 설문(1)의 해결 - 전부인용심결

(2) 乙은 甲의 '표장 3'에 대하여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2023. 9. 4.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甲은 '표장 3'의 불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乙이 청구한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결과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12점)

II. 설문(2) (12점)

1. 法119조1항3호의 의의 및 判例가 실시한 취지
2. 상표권자 甲이 사용했는지 여부 (소극) (*)
 - ① '준비행위'는 사용이 아님, ② '사용권 설정 행위'도 사용이 아님 → 불사용
3. 사용권자 丁이 사용했는지 여부 (소극) (*)
 - (1) 광고행위가 명목상의 사용인 경우 判例
 - (2) 사안의 경우
장기간 불사용 후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사용권 설정 후 사용 증거 형성 → 불사용
4.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소극) (*)
 - (1) 정당한 이유의 의미 및 입증책임 判例
 - (2) 사안의 경우
① 사용의사는 별개, ② 준비행위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음, ③ 침해 우려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음, ④ 상표권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대세적인 공권력에 의한 법률상의 규제 없음 → 정당한 이유 없음
5. 설문(2)의 해결 - 인용심결

(3) 乙의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에 대한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상표법상 법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III. 설문(3) (6점)

1. 부분 소급 소멸 - 法119조6항단서 (*)
심결확정 시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 소멸
2. 재출원 금지 - 法34조3항 (*)
 - (1) 法34조3항의 의의 및 취지
 - (2) 사안의 경우
심결확정 후 3년까지 유사범위에서 재출원하면 거절
3. 일사부재리 - 法150조
본안심결 확정 후 法119조1항3호를 같은 증거로 다시 청구 불가하나, 같은 심판이 아니어서 적용 없음
4. 사용권의 소멸 - 부종성
甲의 상표권에 기초한 丁의 통상사용권이 함께 소멸

[문제-2]

甲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 회사로, 자사 로고 상표 VG가 부착된 가방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乙은 가방 소유자들로부터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upcycling) 의뢰를 받은 후 원단을 해체하고, 기존 원형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갑이나 파우치백으로 가공하여 제작하는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수선업자이다. 乙은 甲의 상표 VG가 부착된 정품 가방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의뢰를 받아 리폼 행위를 한 후, 甲의 상표 **VG로 출처표시된** 리폼 제품을 가방 소유자에게 반환하여 그 대가를 받기도 하고, 甲의 상표 VG로 출처표시된 리폼 제품을 주도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 중고 쇼핑몰에서 판매도 하고 있다.

한편, 丙은 甲의 상표 VG가 표시된 손수건을 대량으로 무단 제작하였고, 이 손수건을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표 VG가 부착된 고가의 정품 가방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표권자 甲은 乙과 丙 각각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乙의 리폼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9점)

I. 설문(1) (9점)

1. 상표권 침해의 의의 및 쟁점정리 (法108조1항1호)

① 유사범위에서 사용하면 침해로 본다. ② 甲이 가방 및 지갑에 등록받은 것을 전제로, 甲 상표권은 일응 유효하고, 양 상표 및 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③ '상표의 사용'임을 전제로 침해인지 문제된다.

2.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 (적극)

(1) 상표의 사용의 의의 (法2조1항11호) (★)

(2) 리폼업자가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한 경우 判例 (★)

(3) 인정근거 判例

(4)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침해이기 위한 요건 判例 (★)

(5) 특별한 사정 유무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判例 (★)

(6) 사안의 경우 - 상표의 사용에 해당

① "반환한 리폼 제품"의 경우 기존 원형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리폼, 상표 VG로 출처표시된 리폼 제품은 거래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출처표시기능이 작동 가능, ② "판매된 리폼 제품"의 경우 리폼업자가 지배·주도하여 리폼 → '상표의 사용'에 해당

3. 설문(1)의 해결 - 침해 성립

① 보호범위 내의 사용이고, '상표의 사용'이고, 甲 상표의 저명성, 유사하게 사용되는 乙의 사용태양, 출처표시로 사용하려는 乙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상표로서의 사용'이므로, ② 침해가 성립한다.

[강사 의견]

- 주어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반환된 리폼 제품"의 경우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으로 볼 수도 있어서, 사안마다 침해 결론을 다르게 내린 답안도 **사실상 동일하게 채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상고심은 "형태나 크기 등이 다른 리폼 제품", 원심은 "제품의 개수, 크기, 용적, 모양, 형태 기능 등이 심하게 다른 새로운 제품"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문제에서 원심에 대응하는 "완전히 다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판례 평석에서 사용한 "출처표시기능이 작동"이라는 표현에 대응하는 "상표 VG로 출처표시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설문(2)의 권리소진 여부는 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항변'인데 설문(2)에서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물은 점을 종합할 때, 출제의도는 "침해 성립"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2) 乙은 자신의 리폼 행위에 대한 甲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상표권 소진을 주장하려고 한다. 乙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6점)

II. 설문(2) (6점)

1. 쟁점정리
2. 권리소진이 되었는지 여부 (소극)
 - (1) 권리소진의 성립요건 判例
 - (2)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判例 (★)
 - (3) 사안의 경우
3. 설문(2)의 해결 - 주장 부당

(3) 丙의 제공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5점)

III. 설문(3) (5점)

1. 쟁점정리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손수건’이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이 아닌지 문제된다.
2. ‘손수건’이 상표법상 상품인지 여부 (소극)
 - (1) 상품의 정의 判例
 - (2)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의 경우 判例 (★)
 - (3) 사안의 경우
3. 설문(3)의 해결 - 침해 아님

[강사 의견]

1. WINK 사건의 대법원판례해설은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위 민사지방법원이 판시한 사례에서 보면, ‘티셔츠’가 이에 해당한다)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위 사례에서 ‘CASS’ ‘카스’가 이에 해당된다)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위 사례에서 예컨대 ‘CASS맥주’라는 문자를 함께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위 사례에서 ‘맥주’가 이에 해당된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스피도 사건 또는 METROCITY 사건의 **구체적 사정**(유·무상 판매 상품의 공존, 양 상품 간 외형 등이 유사)이 제시되지 않았고, WINK 사건의 **특별한 사정**(‘CASS맥주’와 같은 문구가 표시)이 없으므로, 광고매체에 대한 사용의 ‘원칙 유형’으로서 상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출제의도로 보입니다.
3. 한편, 甲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손수건의 상품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도 없어서 가방, 지갑, 손수건을 불문하고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3]

甲과 乙은 '두루마리휴지, 주방용휴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X의 공유 상표권자이고, 丙은 '화장지'에 상표 Y를 사용하는 자이다. 丙은 甲과 乙을 상대로 상표 Y는 등록상표 X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다.

설문(1)

특허심판원은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甲은 불복하여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

甲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丙과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甲은 소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丙도 소취하 합의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甲은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丙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계속 응소하였다. 환송 후 특허법원은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7점)

1) 상표권의 공유자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패소한 경우, 공유자 중 1인만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I. 설문(1)-1

1.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취지 및 쟁점정리 (法162조)
2.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가부 (적극)
 - (1) 상표권 공유의 법적성질 判例
 - (2)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가부 判例 (★)
 - (3) 사안의 경우 - 가능
3. 설문(1)-1의 해결 - 적법

2) 丙은 특허법원의 심결 취소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며 甲과 丙은 소취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I. 설문(1)-2

1. 쟁점정리

2. 甲과 丙의 소취하 합의의 소송법상 취급 - 소의 이익 흠결

(1) 소취하 합의시 소의 이익 존부 判例

(2) 사안의 경우

3. 甲과 丙의 합의의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적극)

(1) 소취하 합의의 묵시적 합의해제 가부 判例 (★)

(2) 사안의 경우

① 甲이 제기한 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甲은 상대방 丙과의 관계에서 단독으로 자기의 소송을 유효하게 취하할 수 있고, ② 甲과 丙은 상고심에서 소취하 합의를 했음에도 환송 후 丙이 소를 취하하지 않고 甲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계속 응소하였으므로, 甲과 丙은 합의가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③ 甲과 丙의 합의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4. 설문(1)-2의 해결 - 丙 주장 부당

- 1회차 -

II.	설문(2) (7점)
1.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취지 및 쟁점정리 (法162조) 【4줄】
	① 심결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심판의 당사자는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사안에서, 甲과 乙의 소취하 합의의 소송법상 취급 및 甲과 乙의 소취하 합의가 합의 해제되어 본안판결을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甲과 乙의 소취하 합의의 소송법상 취급 - 소의 이익 흠결 【9줄】
(1)	소취하 합의시 소의 이익 존부 判例 (2005후1202)
	判例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되어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2)	사안의 경우
	① 심결취소소송 제기 이후에 甲과 乙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② 소의 이익은 소멸되어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데, ③ 특별한 사정으로서 이러한 합의가 합의해제된 것인지 문제된다.
3.	甲과 乙의 합의의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적극) 【10줄】
(1)	소취하 합의의 묵시적 해제 가부 判例 (2005후1202)
	判例는 “계약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2)	사안의 경우

[제63회 대비] 상표법 실전GS A형 (한경훈 변리사)

	① 甲과 乙은 상고심에서 소취하 합의를 했음에도 환송 후 乙이 소를 취하지 않고 甲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계속 응소하였으므로, ② 甲과 乙은 합의가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③ 甲과 乙의 합의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4.	설문(2)의 해결 - 본안판결 【3줄】
	① 甲과 乙의 소취하 합의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고, 그 밖의 소송요건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② 법원은 거절이유를 심리하여 본안판결을 해야 한다.
Ⅲ.	설문(3) (8점)
1.	쟁점정리 【3줄】 설명 저명성이 인정된 상황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공존동의를 약하게
	① 乙 출원에 法34조1항7호의 거절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② 乙 선등록상표의 저명성을 고려한 乙 후출원상표의 등록 방안이 문제된다.
2.	乙 출원에 法34조1항7호의 거절이유 존부 (적극) 【10줄】
(1)	法34조1항7호의 의의 및 判例가 실시한 취지 (2006헌바113)
	①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범위에서 등록받을 수 없다. ② 判例는 “선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요자의 출처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한다.
(2)	사안의 경우
	① 타인 甲의 선등록상표인 “NAHOLO”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인 ‘과자, 빵’에 출원한 것이고, ② 설령 乙이 甲의 이 사건 재출원상표인 “NAHOLO”에 관하여 공존동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제공

- (2) (별개 사안임) 丙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甲과 乙은 丙을 상대로 상표 Y의 사용은 등록상표 X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丙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되던 중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甲과 乙은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상표권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이미 판결까지 선고되었고, 이미 계속 중인 상표권 침해소송의 상소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굳이 심결취소소송을 통하여 심결의 당부를 확정할 실익이 없다"며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

丙은 소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상표권 침해소송은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丙의 상고에 대하여 예상되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논하시오. (13점)

II. 설문(2) (13점)

1. 소의 이익의 의의 및 쟁점정리
2.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 (1) 문제점
 - (2) 원심 判例
 - (3) 상고심 判例 (★)
 - (4) 검토
 - (5) 사안의 경우
3. 설문(2)의 해결 - 파기환송

[강사 의견]

1. 핫윙 사건(2008후4486)은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는데, 이후 乙 회사가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甲 회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위 **민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안”으로서, 주어진 사실관계는 핫윙 사건을 그대로 물어본 문제로 보입니다.
2. 배점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계속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을 언급하는 것도 좋은 대응일 것 같습니다. 다만, 핫윙 사건 사실관계를 그대로 물어본 점에서 배점과 상관없이 **‘소의 이익’**만을 기재하는 것이 출제의도로 보입니다.

[문제-4]

甲은 'A, B, C, D'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X를 2025. 1. 3. 상표등록출원하였고, 출원 후부터 상품 A에 상표 X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甲은 심사관으로부터 지정상품 중 'B, C, D'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거절이유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지정상품 'B, C, D'의 등록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甲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지만 상품 A는 등록되었다. 상품 A에 상표 X가 등록된 후 甲은 갑자기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乙에게 자금을 빌리고 X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다. 甲이 상환 기한 내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乙은 X 상표권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丙에게 X 상표권이 이전등록되었다. X 상표권을 이전 받은 후 상표 X를 사용하고 있던 丙은 甲이 상표 X를 상품 A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의견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품 A에 대한 등록결정까지 상표 X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진행되는 심사절차를 설명하시오. (10점)

I. 설문(1) (10점)

- 1.쟁점정리
- 2.절차① - 부분거절결정 (★)
 - (1) 부분거절결정 제도의 의의 및 취지 (法54조 후단)
 - (2) 사안의 경우
- 3.절차② - 출원공고결정 (★)
 - (1) 출원공고결정의 의의 및 취지 (法57조)
 - (2) 사안의 경우
- 4.절차③ -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 (1) 이의신청의 의의 및 취지 (法60조)
 - (2) 사안의 경우
- 5.절차④ - 등록결정 (★)
 - (1) 등록결정의 의의 및 취지 (法68조)
 - (2) 사안의 경우
- 6.설문(1)의 해결 - 부분거절결정, 출원공고결정 등

(2) 甲이 상품 A에 상표 X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표법상 丙이 甲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이에 대한 甲의 대응 조치를 논하시오. (10점)

II. 설문(2) (10점)

1. 쟁점정리
2. 丙의 조치 - 민사상·형사상·기타 조치
 - (1) 상표권 침해의 의의 (法89조)
 - (2) 침해 성립여부 (적극) (★)
 - (3) 소결 - 권리자로서 조치 고려 가능
3. 甲의 대응 조치 - 사용권의 항변
 - (1) 法104조의2의 의의 및 취지 (★)
 - (2) 사안의 경우
丙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사용권의 항변 가능
4. 설문(2)의 해결 - 민·형사상·기타 조치, 사용권의 항변